성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17년 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건축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내용을 반영하고,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정비 하여 건축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소규모 건축물의 감리비용 적용기준 신설(안 제21조의4항)
 ○ 건축법 제25조 개정에 따른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직접 지정하는 소규모 건축물의 감리비용 산정기준 신설
 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확대(안 제22조제1항)
 ○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건축물에 건축신고대상 건축물 중 건축사 설계대상 건축물까지 확대
 다.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안 제23조제1항 및 별표3)
 ○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허가 시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0으로 사용승인 시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90으로 비율 변경
 ○ 현장조사·검사 대상 건축물 규모 세분화 및 수수료 산출산식 변경
 라. 주택의 유지·관리 지원(안 제25조의3)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의 단독주택 중 안전등급이 D등급 또는 E등급인 건축물에 대하여 유지관리에 필요한 융자 및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함.
 마.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 삭제(안 제32조)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전면 도로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 조항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 2017. 3. 9. ~ 3. 30.(21일간)
 라. 성별영향평가분석 : 해당사항 없음
 마.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성주군조례 제 호

성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영 제15조제5항제15호”를 “영 제15조제5항제16호”로 한다.

제2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4(소규모 건축물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1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제19조의3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 5의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같은 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 계약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 3의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 5에 따른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Y = y1 - \frac{(X - x2)(y1 - y2)}{x1 - x2}$$

X : 당해 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 금액

Y : 당해 공사비요율 y1 : 작은 금액 요율 y2 : 큰 금액 요율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⑥ 허가권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중 “현장조사 및 검사”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14조 및 제19조에 따른 건축신고, 용도변경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다만 건축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한 경우에 한한다.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중 “현장조사 및 검사”를 각각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로 한다.

제23조제1항제1호 전단 중 “30”을 “10”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전단 중 “70”을 “90”으로, “50”을 “70”으로 한다.

제25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등급이 D등급 또는 E등급인 단독주택으로 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았거나 건축심의·건축허가(건축신고 및 용도변경을 포함한다)등을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건축신고 및 용도변경을 포함한다)를 받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보다 건축주·공사 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별표 3】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제23조 관련)

규모(신청 연면적의 합계)	검사대행 소요시간
200제곱미터 미만	2
200제곱미터 이상 660제곱미터 미만	3
660제곱미터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	4
2천제곱미터 이상 4천제곱미터 미만	5
4천제곱미터 이상 6천제곱미터 미만	6
6천제곱미터 이상 8천제곱미터 미만	8
8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10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13
3만제곱미터 이상 5만제곱미터 미만	16
5만제곱미터 이상 7만제곱미터 미만	19
7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23
10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	27
20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	30
30만제곱미터 이상	34

※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의 기술사 노임단가 적용
(매년 1월 1일 기준, 천원 미만 절사)

○ 대행 수수료 = [직접인건비(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의 시간당 기술사 노임단가 × 소요시간)+ 직접경비(직접인건비×10%) + 제경비(직접인건비×110%) +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20%}+ 부가가치세(10%)] × 현장조사비율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가설건축물) ① (생 략)	제21조(가설건축물) ① (현행과 같음)
②영 제15조제5항제15호에 따라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3. 12. 26>	②영 제15조제5항제16호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1조의4(소규모 건축물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1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 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 5]의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같은 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 계약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 3]의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 5]에 따른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Y = y1 - \frac{(X - x2)(y1 - y2)}{x1 - x2}$$ X : 당해 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 금액 Y : 당해 공사비요율 y1 : 작은 금액 요율 y2 : 큰 금액 요율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⑥ 허가권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2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법 제27조 제1항 및 영 제20조 제1항에 따라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여금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제22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29조에 따른 협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전 현장조사 및 검사	1 .----------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2.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허가(건축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한 경우에 한한다)전 현장조사 및 검사	2. 법 제14조 및 제19조에 따른 건축신고, 용도변경허가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다만 건축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한 경우에 한한다.
3.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 전 현장조사 및 검사	3 .----------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4.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	4 .----------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3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 ① 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의 범위 내에서 별표3에서 정하는 산식에 의거 다음 각 호와 같이 대행수수료를 지급한다.<개정 2013. 12. 26, 2015.11.12>	제23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 ①----------.----------
1.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업무대행자에게는 별표3에 의한 대행수수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대행수수료를 지급한다. <개정 2015.11.12>	1 .----------10----------.

2.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업무대행자에게는 별표3에 의한 대행수수료의 100분의 70(단, 임시사용승인일 경우 100분의 20, 추후 사용승인 시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대행수수료를 지급한다. <개정 2015.11.12>	2 .----------90----------70----------.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5조의3(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신설>	제25조의3(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법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등급이 D등급 또는 E등급인 단독주택으로 한다.
① ~ ④ (생 략)	② ~ ⑤ (현행 제1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제32조(최고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①법 제60조 제3항의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전면도로, 공원, 광장, 하천 등에 접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은 법 제60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도로에 대한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로 한다. 1. 가장 넓은 도로 등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40미터 이내의 부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는 당해 전면도로 등의 중심선 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부분을 제외한 부분 3.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이 2개의 교차되는 전면 도로 등을 갖는 경우에 그 부분 중 넓은 도로 등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 거리 40미터 이내의 부분 ②대지와 도로사이 또는 도로의 반대 측에 공원·광장·하천·철도·공공공지·녹지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에 법 제60조 제3항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의 반대쪽 경계선을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으로 본다. ③막다른 도로의 끝에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에 법 제60조 제3항에 따른 높이 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은 대지가 접한 막다른 도로의 너비에 상당하는 거리에 있는 것으로 본다.	<삭 제>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별표 3】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제23조 관련)

규모(신청 연면적의 합계)	검사대행 소요시간
660제곱미터 미만	4
660제곱미터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	5
2천제곱미터 이상 4천제곱미터 미만	6
4천제곱미터 이상 6천제곱미터 미만	8
6천제곱미터 이상 8천제곱미터 미만	10
8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13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16
3만제곱미터 이상 5만제곱미터 미만	19
5만제곱미터 이상 7만제곱미터 미만	23
7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27
10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	30
20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	34
30만제곱미터 이상	38

※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의 기술사 노임단가 적용 (매년 1월 1일 기준, 천원 미만 절사)

o 대행 수수료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의 기술사 노임단가(시간당) × 소요시간 + 직접경비(직접인건비의 10%) +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15%) +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 30%) + 부가가치세10% × 현장조사비율

개 정 안

【별표 3】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제23조 관련)

규모(신청 연면적의 합계)	검사대행 소요시간
200제곱미터 미만	2
200제곱미터 이상 660제곱미터 미만	3
660제곱미터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	4
2천제곱미터 이상 4천제곱미터 미만	5
4천제곱미터 이상 6천제곱미터 미만	6
6천제곱미터 이상 8천제곱미터 미만	8
8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10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13
3만제곱미터 이상 5만제곱미터 미만	16
5만제곱미터 이상 7만제곱미터 미만	19
7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23
10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	27
20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	30
30만제곱미터 이상	34

※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의 기술사 노임단가 적용 (매년 1월 1일 기준, 천원 미만 절사)

o 대행 수수료 = [직접인건비(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의 시간당 기술사 노임단가 × 소요시간)+ 직접경비(직접인건비×10%) + 제경비(직접인건비×110%) +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20%} + 부가가치세(10%)] × 현장조사비율

"사람중심! 경북세상!"

경 상 북 도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허가권자의 감리자 지정 관련 표준조례안 운영지침 통보

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1817(2016. 8. 3)호와 관련입니다.

2. 「건축법」(법률 제14016호, 2016.2.3) 제25조제12항 및 「건축법시행령」(대통령령 제27365호, 2016.7.19) 제19조의2 제5항에서 위임된 조례에 대한 운영지침안을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감리자 지정 표준조례안 1부. 끝.

경 상 북 도 지 사

수신자 포항시장, 경주시장, 김천시장, 안동시장, 구미시장, 영주시장, 영천시장, 상주시장, 문경시장, 경산시장, 군위군수, 의성군수, 청송군수, 영양군수, 영덕군수, 청도군수, 고령군수, 성주군수, 칠곡군수, 예천군수, 봉화군수, 울진군수, 울릉군수, 경상북도건축사회 회장 귀하

주무관	**노성호**	건축담당	**배도석**	건축디자인과 장 전결 2016. 8. 4. **이재윤**	
협조자					

시행 건축디자인과-13228 (2016. 8. 4.) 접수 도시건축과-37412 (2016. 8. 4.)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 www.gb.go.kr

전화번호 054-880-4016 팩스번호 054-880-4039 / nsho@korea.kr / 대국민 공개

"위대한 여정 새로운 도약"

표준 조례(안) 운영 지침

■ 법 제25조제12항 관련

제00조(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 제1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5]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같은 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동 기준의 [별표3]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별표5]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Y = y1 - \frac{(X - x2)(y1 - y2)}{x1 - x2}$$

X : 당해 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 금액

Y : 당해 공사비요율 y1 : 작은 금액 요율 y2 : 큰 금액 요율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⑥ 허가권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성주군 건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건축법 제27조

○ 제27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 ② <생략>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2016년 기술사 노임단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348,160원/8시간

- 시간당 43,530원

○ 허가건당 소요 금액 (3시간 적용, 원단위 절사)

- 직접인건비 130,590원(3시간, 천원미만 절사) + 직접경비(직접인건비의 10%) 13,059원 +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15%) 150,178원 +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 30%) 84,230원 + 부가가치세(10%) 37,805원 = 415,000원

○ 신고건당 소요금액 (2시간 적용, 원단위 절사)

- 직접인건비 87,060원(2시간, 천원미만 절사) + 직접경비(직접 인건비의 10%) 8,706원 +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15%) 100,119원 +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 30%) 56,153원 + 부가가치세(10%) 25,203원 = 277,000원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						
	○						
	소계(a)						
세출	○ 허가건수	300	300	300	300	300	1,500건
	○ 평균비용	415	415	415	415	415	415
	○ 신고건수	540	540	540	540	540	2,700원
	○ 평균비용	277	277	277	277	277	277
	소계(b)	274,080	274,080	274,080	274,080	274,080	1,370,400
□ 총 비용(a-b)		-274,080	-274,080	-274,080	-274,080	-274,080	-1,370,400

※ 허가건수 및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 변동에 따라 추후 증가 가능

4. 재원조달 방안 (단위: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17)	2차년도 (2018)	3차년도 (2019)	4차년도 (2020)	5차년도 (2021)	합계
국비							
도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시・군비		274,080	274,080	274,080	274,080	274,080	1,370,400
민간							
기타							
합계		274,080	274,080	274,080	274,080	274,080	1,370,400

5. 부대의견 : 소요예산을 계상하였으므로, 비용 추계금액이 변동될 여지가 있으며 비용추계 활용상의 한계가 있음.

6. 작 성 자 : 도시건축과 건축관리담당 김대현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연간 소요 금액

- 허가 1건당 평균소요금액 415,000원 × 300건 = 124,500,000원
- 신고 1건당 평균소요금액 277,000원 × 540건 = 149,580,000원

2. 성주군 건축허가(신고) 현황(2014 ~ 2016) (단위 : 건, 동, ㎡)

년도별	구분	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용도변경
계	건 수	2,537	2,016	444	0	2	1	9	65
	동 수	3,846	3,025	733	0	2	1	10	75
	연면적	1,107,411	960,041	130,524	0	444	105	2,739	13,558
2014	건 수	825	665	137	0	0	1	4	18
	동 수	1,246	989	232	0	0	1	4	20
	연면적	317,724	268,739	44,212	0	0	105	405	4,263
2015	건 수	905	726	146	0	0	0	3	30
	동 수	1,364	1,091	235	0	0	0	4	34
	연면적	405,781	358,720	39,895	0	0	0	849	6,317
2016	건 수	807	625	161	0	2	0	2	17
	동 수	1,236	945	266	0	2	0	2	21
	연면적	383,906	332,582	46,417	0	444	0	1,485	2,978

o 2014 ~ 2016년도 허가(신고) 건수 평균치 : 허가건 300건, 신고건 540건

o 2014 ~ 2016년도 건축 규모별 평균 : 허가건 200제곱미터 ~ 660제곱미터(3시간)
신고건 200제곱미터 미만(2시간)

3. 건당 평균소요비용 산출

※ 2016년 기술사 노임단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348,160원/8시간

- 시간당 43,530원 (단위 : 원)

		노임단가	평균시간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부가세	합계
소요	○ 허가건	43,530	3시간	130,590	13,059	150,178	84,230	37,805	415,000
금액	○ 신고건	43,530	2시간	87,060	8,706	100,119	56,153	25,203	277,000

4. 성주군 건축허가(신고) 면적별 현황(2014 ~ 2016)

규모(신청 연면적의 합계)	년도별	허가(신고)사항		
		계	허가	신고
계	계	2,537	906	1,631
	2014	825	284	541
	2015	905	334	571
	2016	807	288	519
200제곱미터 미만	2014	503	8	495
	2015	535	19	516
	2016	494	21	473
200제곱미터 이상 660제곱미터 미만	2014	185	147	38
	2015	252	202	50
	2016	173	132	41
66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	2014	90	84	6
	2015	84	79	5
	2016	101	98	3
2000제곱미터 이상 4,000제곱미터 미만	2014	31	29	2
	2015	17	17	0
	2016	28	26	2
4,000제곱미터 이상 6,000제곱미터 미만	2014	10	10	0
	2015	5	5	0
	2016	3	3	0
6,000제곱미터 이상 8,000제곱미터 미만	2014	2	2	0
	2015	1	1	0
	2016	3	3	0
8,000제곱미터 이상 10,000제곱미터 미만	2014	0	0	0
	2015	1	1	0
	2016	3	3	0
10,000제곱미터 이상 30,000제곱미터 미만	2014	4	4	0
	2015	7	7	0
	2016	1	1	0
30,000제곱미터 이상 50,000제곱미터 미만	2014	0	0	0
	2015	2	2	0
	2016	1	1	0
50,000제곱미터 이상 70,000제곱미터 미만	2014	0	0	0
	2015	1	1	0
	2016	0	0	0
70,000제곱미터 이상 100,000제곱미터 미만	2014	0	0	0
	2015	0	0	0
	2016	0	0	0